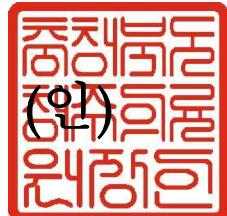


□ 공고 제2020-30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0. 3. 16.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인)



규정 제472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7조(정원) 제2항의 별표1을 별지와 같이한다.

제32조(외래간호팀) 외래간호팀은 외래, 주사실, 간호교육전담실, 응급실, 수술실, 인공신장실에 수간호사를 둘 수 있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행과 같음)

2. 간호교육전담실

가. 간호사 교육, 인력관리 및 교육시행에 관한 사항

나. 신규간호사 및 경력간호사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다. 신규간호사 및 경력간호사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라. 교육과정에서의 성과, 평가, 조정에 관한 사항

마. 간호부 교육전반에 관한 사항 관리

3. ~ 7.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안)
<p>제32조(외래간호팀) 외래간호팀은 외래, 응급실, 수술실, 인공신장실에 수간호사를 둘 수 있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생략)</p> <p>2. 외래 간호 교육 계획수립 및 직무관리</p> <p>3.~7. (생략)</p>	<p>제32조(외래간호팀) 외래간호팀은 외래, <u>주사실</u>, <u>간호교육전담실</u>, 응급실, 수술실, 인공신장실에 수간호사를 둘 수 있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u>2. 간호교육전담실</u></p> <p>가. <u>간호사 교육, 인력관리 및 교육시행에 관한 사항</u></p> <p>나. <u>신규간호사 및 경력간호사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u></p> <p>다. <u>신규간호사 및 경력간호사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u></p> <p>라. <u>교육과정에서의 성과, 평가, 조정에 관한 사항</u></p> <p>마. <u>간호부 전반교육에 관한 사항 관리</u></p> <p>3.~7.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현행)

[별표 1]

정 원 표

직 군	직 렬	직 종	직 급	계	임 원	계 약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계	594	1	67	6	39	100	186	195		
		소 계	1	1								
		원 장	1	1								
의 료		소 계	522		66	4	33	87	161	171		
		의무직	52		52							
		의 사	46		46							
		치 과 의	4		4							
		한 의 사	2		2							
		약무직(약사/한약사)	14		14							
		간호직(간호사)	278			2	27	62	104	83		
		의료기술직	91			2	6	19	39	25		
		임상병리사	20									
		방사선사	17									
		물리치료사	17									
		작업치료사	7									
		치과위생사	7									
		사회복지사	6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									
일 반		응급구조사	4									
		산업위생기사	4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									
		영양사	5									
		간호조무직(간호조무사)	87					6	18	63		
		소 계	71		1	2	6	13	25	24		
		관리	45		1	2	6	11	17	8		
		행정	35									
		전기기사										
		열관리사										
기 능		환경기사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의공기사										
		소방기사										
		기능	26						2	8	16	
		운전사	1									
		조리사	1									
기 계 원		사무원	14									
		장례지도사	8									
		기계원	2									

※ 공중보건의사는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

(개정)

[별표 1]

정 원 표

직 군	직 렬	직 종	직 급	계	임 원	계 약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계	594	1	67	6	41	105	195	179		
		소 계	1	1								
		원 장	1	1								
의 료		소 계	522		66	4	35	90	168	159		
		의무직	52		52							
		의 사	46		46							
		치 과 의	4		4							
		한 의 사	2		2							
		약무직(약사/한약사)	14		14							
		간호직(간호사)	278			2	28	62	107	79		
		의료기술직	91			2	7	20	40	22		
		임상병리사	20									
		방사선사	17									
		물리치료사	17									
		작업치료사	7									
		치과위생사	7									
		사회복지사	6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									
일 반		응급구조사	4									
		산업위생기사	4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									
		영양사	5									
		간호조무직(간호조무사)	87					8	21	58		
		소 계	71		1	2	6	15	27	20		
		관리	45		1	2	6	12	18	6		
		행정	35									
		전기기사										
		열관리사										
		환경기사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의공기사										
		소방기사										
		기능	26					3	9	14		
		운전사	1									
		조리사	1									
		사무원	14									
		장례지도사	8									
		기계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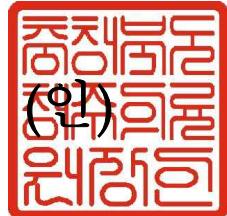
※ 공중보건의사는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

□ 공고 제2020-31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0. 3. 16.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규정 제473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0조 (보직의 원칙)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년, 정직 미만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제56조의 1 (징계의 감경)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5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며 징계사유가 음주운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 채용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제60조 (징계사유의 시효)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 채용비리의 경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안)
<p>제30조(보직의 원칙) ①~⑤ 생략 <u>⑥(신설)</u></p> <p>제56조의 1(징계의 감경) 인사위원회는 징계협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5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며 <u>징계사유가 음주운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u></p> <p>제56조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u>금품 및 향응수수금품의 횡령·유용의 경우 5년</u>)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p>	<p>제30조(보직의 원칙) ①~⑤ 생략 <u>⑥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년, 정직 미만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u></p> <p>제56조의 1(징계의 감경) 인사위원회는 징계협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5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며 <u>징계사유가 음주운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 5년</u>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공고 제2020-32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0. 3. 16.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규정 제474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보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7조(수당의 종류) 제2항의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별표 5)

제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수당종류	지급 대상	지급률 지급액
1~3	(생략)	(생략)
4. 직무수당	가. 기술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인사부서에 등록하여 인사규정 제4조의 해당 직종 당해 분야에서 근무하는 자에게만 지급○ 두 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현 근무부서에 적합한 자격하나만을 인정한다.
	나.~라.	(생략)
5.~20.	(생략)	(생략)

<개정>

(별표 5)

제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수당종류	지급 대상	지급률 지급액
1~3	(생략)	(생략)
4. 직무수당	가. 기술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 1]에 의한 자격을 소지하고 인사부서에 등록하여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는 자에게만 지급하되 의료업무수당과 병과는 안됨○ 두 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현 근무부서에 적합한 자격하나만을 인정한다.
	나.~라.	(생략)
5.~20.	(생략)	(생략)

□ 공고 제2020-33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진료실적급지급기준 일부개정기준을 이에 공포 한다.

2020. 3. 16.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기준 제127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진료실적급지급기준 일부개정기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진료실적급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별 진료목표액

(단위 : 천원)

진료과별	월간 목표액 (또는 인원)	목표급 상한액	비고
내 과	110,000	16,500	
정신건강의학과	66,000	9,900	
외 과	85,000	12,750	
신경외과	60,000	9,000	
정형외과	102,000	15,300	
재활의학과	80,000	12,000	
신경과	60,000	9,000	
산부인과	30,000	4,500	
소아청소년과	25,000	3,750	
안 과	40,000	6,000	
이비인후과	40,000	6,000	
비뇨기과	65,000	9,750	
피부과	40,000	6,000	
치 과	40,000	6,000	
한방과 및 한의원	30,000	4,500	
건강 검진팀	내 과	250,000 일 60명 (대장내시경30명)	37,500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150,000	22,500
응급실	월 750명	목표액 15%	응급실 전체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2,650	
영상의학과		9,300	
마취통증의학과		3,300	

* 공중보건의는 진료목표액 산정에서 제외함

* 응급실 월간목표액은 월간목표인원에 매월 행위료 수입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연봉계약자(진료실적금 대상)에게 균등지급한다.

[별표 1] <개정(안)>

과별 진료목표액

(단위 : 천원)

진료과별	월간 목표액 (또는 인원)	목표급 상한액	비고
내 과	110,000	16,500	
정신건강의학과	66,000	9,900	
외 과	85,000	12,750	
신경외과	60,000	9,000	
정형외과	102,000	15,300	
재활의학과	80,000	12,000	
신경과	60,000	9,000	
산부인과	30,000	4,500	
소아청소년과	25,000	3,750	
안과	40,000	6,000	
이비인후과	40,000	6,000	
비뇨기과	65,000	9,750	
피부과	40,000	6,000	
치과	40,000	6,000	
한방과 및 한의원	30,000	4,500	
건강 검진팀	내 과	250,000 일 60명 (대장내시경30명)	37,500 종합검진 근무의사 (치과제외) 전체
	가정의학과	150,000	22,500 직업환경의학과(보건대행 전담 제외) 전체
	직업환경의학과	50,000	7,500 보건대행 전담
	응급실	월 750명	목표액 15% 응급실 전체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2,650	
영상의학과		9,300	
마취통증의학과		3,300	

* 공중보건의는 진료목표액 산정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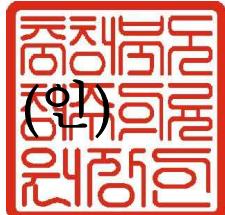
* 응급실 월간목표액은 월간목표인원에 매월 행위료 수입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연봉계약자(진료실적급 대상)에게 균등지급한다.

□ 공고 제2020-34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진료비감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 한다.

2020. 3. 16.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인)



규정 제475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진료비감면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진료비감면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진료비 감면)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한하여 진료비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②진료비 감면 내역은 분기별 원장에게 보고한다.(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진료비 감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한하여 진료비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신설)	제3조(진료비 감면)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한하여 진료비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u>②진료비 감면 내역은 분기별 원장에게 보고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